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49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

2. [redacted]

3. [redacted]

4. [redacted]

5. [redacted]

6. [redacted]

7. [redacted]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에 대한 소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 중 328,22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8

2. 원고의 피고[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이 한 재산세 587,908,260원의 부과처분 중 565,949,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재산세 340,075,220원의 부과처분 중 326,59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재산세 36,840,550원의 부과처분 중 35,37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재산세 19,677,050원의 부과처분 중 18,896,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한 재산세 17,621,100원의 부과처분 중 16,922,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한 재산세 12,281,670원의 부과처분 중 11,79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이 한 재산세 12,483,710원의 부과처분 중 11,98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8

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4. 6.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따른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9. 5. 원고에게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은 2014년분 재산세 587,908,2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년분 재산세 340,075,22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년분 재산세 36,840,5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년분 재산세 19,677,0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년분 재산세 17,621,1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광주시장은 2014년분 재산세 12,281,6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은 2014년분 재산세 12,483,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대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8

시하였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898 판결).

마.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 부분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세액을 각 환급하였다.

순번	피고	취소일	감면조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원)
1	[redacted]소장	2016. 3. 29.	21,958,800
2	[redacted]구청장	2016. 3. 31.	11,847,140
3	[redacted]구청장	2016. 3. 9.	1,460,690
4	[redacted]구청장	2016. 3. 21.	780,210
5	[redacted]시장	2016. 3. 9.	827,690
6	[redacted]시장	2016. 3. 3.	486,970
7	[redacted]출장소장	2016. 4. 12.	494,9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2, 3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의 1.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에 대한 소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 중 328,228,080원(당초 부과된 재산세 340,075,220원 - 피고가 직권취소하고 환급한 재산세 11,847,170원)을 초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8

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하여 재산세 340,075,220원의 부과처분 중 326,59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감면을 주장하는 세액 13,484,990원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감면하여 환급한 13,515,58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기존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5.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340,075,220원 중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은 11,847,140원이고,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340,075,220원의 재산세 부과처분 중 11,847,140원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의 1.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위와 같이 취소되고 환급된 세액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에 대한 소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 중 328,22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8

판사 김선영

판사 홍영진